

직무설명서

구분	채용분야			근무조건		채용 인원
	직급	직무분야	채용권역	근무형태	근무지	
신입직	5급	건설안전(건축)	공고 참조	전일제 (주 40시간)	(최초 5년) 채용권역 내 (5년 경과) 전국 순환	공고 참조

공단사업	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·개발 및 보급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,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·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관리 등 기술지원,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,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지원,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·운영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·발간·제공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,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,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사업 수행 등
핵심직무	▶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안전 분야 기술지도, 안전점검, 심사지원 및 확인, 컨설팅, 교육지원, 재해원인조사 및 분석 등 사고·사망재해 예방 사업 수행
수행업무	▶ 전국 중상해, 사고 사망 등 재해분석을 통한 고위험 사업장 선정 및 재해예방 기술지원·점검 ▶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이 취약한 중·소 종합(전문)건설업체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착 컨설팅 지원 ▶ 기술·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건설현장의 유해·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산재예방 안전시설 비용지원 ▶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지원·확인, 중대재해 원인조사, 진단 등 재해예방활동 수행 ▶ 위험성평가, KOSHA-MS, 민간·공공기관 안전수준 평가 등 안전경영환경 정착 지원 ▶ 건설업체 및 공공발주기관의 재해율·사망만인율 산정 및 재해예방 실적평가 수행 ▶ 건설 연구과제, 사고조사, 실태조사, 데이터 분석, 산업안전통계 등 연구업무 수행 ▶ 건설안전 분야 교육계획 수립 및 과정개발, 미디어 개발·보급, 교육과정 운영 제반 관리 등 ▶ 유해·위험 기계 및 비계·동바리 등 가설재의 설계·설치·해체 시 사전안전성 심사 및 확인 지원
필요지식 및 기술	▶ (주요) 건축공사 작업 안전 관련분야, 주요 공정 및 공법 등의 공학적 지식 ▶ (주요) 건축공사 시 가설구조물 등의 특성, 설계·운용 및 유해·위험성 관련 지식 ▶ (일반) 잠재된 유해·위험요인 도출과 개선대책을 제시·확인할 수 있는 현장점검·기술지도 수행 능력 ▶ (일반) 건축공정·안전보건정보 이해와 위험성평가 컨설팅 기술 및 교육할 수 있는 지식·소통 능력 ▶ (일반)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·확인 등 정부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·기술 ▶ (일반)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 타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능력 ▶ (일반)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최신 제도에 대한 이해도 ▶ (일반) 국제협력 교류, 국제안전보건 동향 파악 등의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 ▶ (일반) 통계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컴퓨터 활용 능력(한글, 엑셀, 파워포인트 등)
필요역량 및 태도	▶ 직무수행능력, 조직이해능력, 자기개발능력 ▶ 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대인관계능력, 정보처리능력, 기술능력 ▶ 객관적·종합적인 분석태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▶ 조직 내·외부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및 현장 대응력 ▶ 산재예방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청렴·윤리의식 및 공정성, 공공조직 이해도 등

(지원자격) 아래 **모든** 조건을 충족할 경우 **지원가능**(단, 기타분야는 각 전형별 별도요건 포함)

지 원 자 격	학위	▶ 학위 무관		
	자격	▶ 자격 무관		
	경력	▶ 경력 무관		
	기타	장애	▶ 접수마감일 기준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	
		보훈	▶ 접수마감일 기준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
지역인재		▶ 최종학력 기준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소재(부산 제외)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(예정)자 ※ 대학원, 사이버대학, 평생교육기관, 독학학위 취득자, 학점인정학위 취득자 등은 해당학력을 제외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함		
증빙서류	장애	▶ (경증) 장애인증명서 / (중증) 중증장애인 확인서		
	보훈	▶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		
	지역인재	▶ 최종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		

(우대사항) 우대자격증 보유자는 아래 자격증 종류에 따라 [**필기**] 전형 만점의 **가점 차등부여**

우 대 사 항	자격	구분	가산점 비율	자격증 종류
		기술사	5%	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, 건설기계, 건설안전, 조경, 교통, 도시계획, 자원관리, 건축전기설비
		기능장	3%	건설기계정비, 건축목재시공, 건축일반시공
		기사	3%	건축, 건축설비, 실내건축, 조경, 교통, 도시계획, 건설기계설비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, 건설안전
		산업기사	1%	건축, 건축목공, 건축설비, 실내건축, 건축일반시공, 방수, 건설기계설비, 교통, 건설기계정비, 궤도장비정비, 건설안전
증빙서류		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		